

약물 인지향상은 부정행위인가?*

이상목** · 최종현***

I. 머리말

III. 약물 인지향상과 공정성

II. 'Cheating'과 공정성

IV. 맺음말

【국문초록】 인지향상에 반대하는 주장들 중 하나는 인지향상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행위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지향상의 부정행위 논증은 인지향상이 공정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부와 정보를 가진 사회계층이 주로 인지향상을 독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지적 격차를 유발하여 학력과 성적의 차이로 이어지고 다시 부와 정보의 격차가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멜만은 인지향상제를 모두에게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면 이러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인지향상제로 같은 수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가장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만일 약물 인지향상이 모두에게 동일한 인지 향상 효과가 있다면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간의 높은 인지적 격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지 못하고 평등한 기회도 주지 못하는 약물 인지향상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의 신경정신약물학 연구에 따르면 인지향상제는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인지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를 준다. 즉 약물 인지향상은 건강한 사람들 간의 인지적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불러온다. 약물 인지향상은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면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약물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규칙은 롤즈의 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약물 인지향상은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색인어】 약물 인지향상, 부정행위, 공정성, 롤즈의 차등 원칙, 평등한 기회 균등의 원칙

I. 머리말

운 장래에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현재의 인간 종은 자연적 진화와 교육과 같은 문화적 진화를 통해 발전 중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적용은 가까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71-A00005).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윤리문화학과

*** 부산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인데, 인간에 대한 인위적인 향상(enhancement)을 지지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transhumanist)들은 인류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향상을 가능하게 만들 잠재성을 지닌 현존 과학기술들 중에는 유전공학, 정신약물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나노기술 등이 있다. 그러나 생명보수주의자(bioconservative)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치료에 적용되는 데 머물지 않고 인간 향상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향상을 반대하는 가장 흔한 주장들 중 하나는 향상이 부정행위(cheating)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향상이 어려운 목표를 너무 손쉽게 성취하므로 공정하지 못하며 속임수를 저지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생명보수주의자인 카스(Leon R. Kass)는 “많은 사람들이 혼육과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분야에 약물, 유전자 조작, 인공삽입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¹⁾고 지적한다.

신경과학자 가자니가(Micheal S. Gazzaniga)는 약물 인지향상(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에 대해 대중들이 본능적인 혐오감을 보이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 우리는 약으로 인지 능력을 변화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인지향상을 부정행위(cheating)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어떤 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뛰어나게 된다면, 그건 괜찮다 . . . 하지만 약을 복용한 후 한 번의 독서로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부정행위와도 같다.”²⁾ 인지향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일부 대학생

들은 더 효과적인 시험공부를 위해 인지향상제로 간주되는 약물들을 복용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스포츠의 도핑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신경과학자 혼 경(Sir Gabriel Horn)은 “인지향상이 교육 당국에게 심각하게 비춰진다면, 당국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변 샘플을 조사할 수 있다.”³⁾고 주장하였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것처럼 인지향상제의 복용도 부정행위(cheating)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 우선 ‘cheating’의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사용권 국가들에서 ‘cheating’은 매우 흔히 쓰이는 일상용어이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cheating’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명료하게 정의내리면 이 개념이 공정성(fairness)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정성을 척도로 인지향상을 평가한다면 인지향상이 부정행위인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지만, 본 논문은 인지향상제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신경윤리학자들의 입장들을 기술한 후, 롤즈(John Rawls)의 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지향상의 부정행위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롤즈는 기본적인 사회제도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으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했는데 이는 인지향상제의 공정성에 대한 물음에도 확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

인지향상(cognition enhancement)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유전자 조작, 향정신성 약물, 전자기 자극, 인공 기관 삽입 등을 시술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1) Kass L. R., *Beyond Therapy*,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3, pp. 291.

2) 마이클 가자니가, 김효은 번역, 『윤리적 뇌』, 바다출판사, 2009, 106면.

3) Henderson M., “Academy of Medical Sciences suggests urine tests to detect smart drug,” *The Times*, 22 May 2008.

4) Rawls J.,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개입들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유전공학이나 물리적 수단을 활용한 인지향상이 아니라 약물 인지향상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유전적 향상이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향상 등 다른 유형의 인지향상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사변적일 수밖에 없지만 약물 인지향상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시도되어 왔기 때문에 실천윤리학적 숙고가 요청된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인지향상(cognitive enhancement)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약물을 이용한 인간의 인지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물 인지향상에 쓰이는 약물들로는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암페타민(amphetamine), 모다피닐(modafinil)과 같은 중추신경자극제(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와 다양한 도파민 작용제들(dopamine agonists)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칭하여 인지향상제(cognitive enhancer)라고 부른다. 이 글은 건강한 성인들이 인지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인가를 롤즈의 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I. ‘Cheating’ 과 공정성

콜린스 코빌드 영어 사전(Collins Cobuild Advanced Dictionary of English)에서 ‘cheating’의 동사 ‘cheat’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 예를 들면 누군가가 게임이나 시험에서 따라야 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따르지 않다.(When someone cheats, they do not obey a set of

rules which they should be obeying, for example in a game or exam.)

2. 누군가가 부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 하다.(If someone cheats you out of something, they get it from you by behaving dishonestly.)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는 ‘chea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1. 속이다(to defraud)
2. 속임수로 빼앗다.(to deprive of by deceit)
3. 계락을 이용해 속이다.(to deceive, impose upon, trick)
4. 사기를 쳐서 속임수를 실행하다.(to deal fraudulently, practice deceit)

이들 사전에서 ‘cheat’는 승부에서의 ‘부정행위’와 무언가를 빼앗기 위한 ‘속임수’로 정의된다. 그런데 ‘cheating’이라는 용어는 영어권 국가에서 스포츠, 게임, 학교, 정치, 법, 사업, 납세, 사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소 애매하다. 그린(Stuart P. Green)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 번째로 ‘cheating’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도덕적 개념으로 규정하기 힘들다.⁵⁾ 두 번째로 이 용어가 속임수(deception), 착취(exploitation), 강압(coercion), 불복종(disobedience), 약속 불이행(promise-breaking), 불성실(disloyalty)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⁶⁾

그린은 ‘cheating’이 언급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지적한다. 첫 번째로 부정행위자란 규범적이고, 의무적이고, 규제적이며, 행

5) Green, S.P., “Cheating,” *Law and Philosophy*, Vol.185, 2004, pp. 185.

6) Green, S.P., pp. 185.

위를 규정하는 규칙을 어겨야 한다.⁷⁾ 두 번째로 규칙은 공정해야 하고 공명정대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에 따르는 집단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부정행위자라고 부른다.⁸⁾

그렇다면 'cheating'이 사전적으로 'deception'과 혼용된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속임수(deception)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는 'cheating'과 'deception'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교통 정체에서 벗어나려고 갓길로 빠져 나가는 운전자의 예를 든다.⁹⁾ 이 운전자는 위급한 상황일 때만 갓길을 이용하라는 규칙을 어겼고 다른 운전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자신만 빨리 가려는 불공정한 이익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그는 'cheating'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deception'이 은밀함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속임수(deception)가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로 간주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cheating)는 속임수를 항상 수반하지는 않으면서도 타인에 대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누군가가 공정성(fairness)이 수반된 규칙을 준수한다면, 그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거나 적어도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통념적으로 공정성은 어떤 활동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공평한 척도로 평가하며, 기여한 몫에 따라 성과를 분배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 만일 약물 인지향상이 공정성에 부합하면서 의도적인 규칙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유형의 향상은 부정행위와는 무관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향상제의 사용이

부정행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지향상제의 허용규칙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규칙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가리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약물 인지향상에 대한 어떤 규칙도 없는 상황은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 단체가 육체적 향상(physical enhancement)에 공통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세계 도핑 방지 위원회는 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도핑(doping)이라고 규정하고 금지 약물 목록을 만들어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상시적으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도핑 규제를 시행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약물로 경기수행능력을 향상시킨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 단체들은 약물 사용이 공정한 경기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반도핑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의 육체적 향상을 제한하는 도핑반대규정은 공식적인 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약물 인지향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나 관행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약물 인지향상이 부정행위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지만 약물 인지향상을 금지하는 정언적인 논증을 정식화하고 사회규범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 다른 측에서는 약물의 이익과 위험을 비교평가한 후 이익이 해를 능가한다고 판단하면 약물 인지향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약물 인지향상에 대한 상반된 태도들이 대립하면서 어떤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이 문제에

7) Ibid., pp. 137.

8) Ibid., pp. 185.

9) Ibid., pp. 145.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사회적 규약조차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규칙 부재를 근거로 약물 인지향상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을까? 이 경우에 개별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각자가 자유롭게 인지향상제 복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자유방임주의는 안전성, 사회적 압력, 부자연스러움 등과 같이 인지향상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자유방임 정책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인지향상의 접근권과 결과의 불평등은 공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약물 인지향상의 도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따라서 인지향상제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약물 인지향상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윤리적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앞으로 있을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윤리학적 천착을 위해 미국의 신경윤리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롤즈의 정의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III. 약물 인지향상의 공정성 여부

1) 인지향상제의 불평등 논쟁

공정성은 기회와 분배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지향상의 논의에서 자주 제기되는 불평등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불평등 논쟁’은 인지향상이 사회에 용인된다면 일부 계층만이 인지향상제를 복용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그 효과를 독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부유하거나 인지향상제에 대한 정보에 밝은 사람들일수록 인지향상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은 반면에 가난하거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지향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인지적 격차가 나타나면서 불평등이 초래된다. 즉 부와 정보의 불평등은 인지향상에 대한 접근권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인지적 격차라는 결과의 불평등으로 귀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지적 격차는 학력과 성적의 차이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다. 요컨대 약물 인지향상 반대론자들은 인지향상제의 허용으로 정보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적 불평등, 학습수행능력의 불평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논쟁’에 대해 파라(Martha J. Farah) 등은 이미 사회가 특정 유형의 향상들과 그에 수반되는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지향상제 허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⁰⁾ 그들은 성형과 같은 미용 향상과 과외와 같은 비생물학적인 인지 향상을 대표적인 예로 지목하고 있다. 이 유형의 향상들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지만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다른 유형의 향상들에서는 불평등이 용인되는데 약물 인지향상만큼은 그럴 수 없다면 둘의 차이를 입증할 근거가 요구된다.

파라 등의 주장은 인간의 권리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자유를 누리는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나 사회는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제도는 자유를 위협하는 원천이므로 제도로부터 개인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경제적 지

10) Farah M.J., Illes J., Cook-Deegan R. et al., “Neurocognitive Enhancement: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 *Nature Reviews Neuroscience*, Vol. 5, 2004, pp. 423.

위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취득한 인지향상제를 소유하고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 채터지(Anjan Chatterjee)는 인지향상 찬성론자들의 논증이 사실과 당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류가 교육, 각종 재화들, 사회 계급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안전에서의 근본적인 불평등에도 직면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채터지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들을 근거로 또 다른 불평등을 추가로 용납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¹¹⁾ 인지향상이 불평등을 가중시켜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한다면 건강한 성인들이 인지향상을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인지향상이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면, 부정행위의 정의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 중 '불공정한 이익 추구'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렇다면 약물 인지향상을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금지규정을 두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약물 인지향상 자체와 그 분배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약물 인지향상 자체가 아니라 향상을 분배하는 제도에 있다. 그렇다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자유방임적인 분배 원칙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인지향상의 기회가 보장되는 분배 원칙을 세운다면 불평등이 해소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멜만(Mexwell J. Mehlman)은 안전성과 효능이 보장된다면 인지향상제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인지향상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 시장에서 향상제를 구입하도록 허용하고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향상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한다.¹²⁾

멜만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안이 부유할수록 과외 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높은 지적 능력을 타고난 학생일수록 보다 나은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수업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약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인지향상이 편중되는 현상은 수많은 불평등 중 하나를 추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평등의 만연이라는 사실로부터 다른 불평등의 용인이라는 당위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들의 인지향상으로 인한 불평등은 인정하면서도 인지향상에 의한 불평등만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멜만은 인지향상에 관한 부정행위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각자가 어느 정도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다. 그는 모두가 인지향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규칙을 제정하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거나 일부만이 이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모두가 같은 수준의 이익을 가져간다면 가장 공정한 분배 원칙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물 인지향상을 허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수만이 불공정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행위 논란은 사라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약물 인지향상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평한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모두가 약물 인지향상으로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면 인지 기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롤즈(John Rawls)의 정의 원칙은 이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실

11) Chatterjee A. "Is it acceptable for people to take methylphenidate to enhance performance? No," *BMJ*, Vol.338, 2009, b1956.

12) Mehlman M.J., "Cognition-enhancing drugs," *Milbank Q*, Vol 82., 2004, pp. 499.

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2) 롤즈의 정의원칙에서 본 약물 인지향상의 공정성

인지향상의 공정성 문제를 인지향상제의 효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로 구별하여 논의를 해 볼 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의 신경정신약물학 연구들에서 인지향상제의 효능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인지향상제의 효능이 모두에게 동일한 경우

롤즈는 사회경제적 재화의 분배를 다루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중에 정의의 제 2원칙(second principle of justice)을 제안하고 있다.¹³⁾ 제 2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만 용인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며, 둘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 and opportunity)이다.

롤즈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자들의 좀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경우이다.”¹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 대안적인 사회 기본 구조들 중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익이 가도록 사회경제적 재화를 차등 있게

분배하는 구조를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구조에서의 불평등은 용납될 수 있다. 롤즈는 천부적인 재능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현실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재능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우연적인 속성에 불과하다고 본다.¹⁵⁾ 재능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우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 인지향상제가 모두에게 허용된 사회와 금지된 사회 중 어느 쪽이 공정한 사회인지를 평가해보자. 인지향상제가 금지된 사회는 사람들 간의 인지능력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낮은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를 입지는 않지만 결코 어떤 혜택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지향상제의 금지는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편 인지향상제가 허용된 사회에서는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모두가 인지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둘 간의 상대적인 인지적 차이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인지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어떤 이익이나 손해도 보지 않는다. 인지향상제가 허용된 사회도 금지된 사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지적, 사회경제적 격차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약물 인지향상의 허용은 롤즈의 차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인지향상제가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맥락에서 약물 인지향상이 위치재(positional good)이기 때문이다. 위치재란 다른 사람들이 소비한 것과 상대적인 맥락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위치재의 예로는 과외가 있다.

13) Rawls J., pp. 52-53.

14) Ibid., pp. 65.

15) Ibid., pp. 64.

어떤 학생이 성적향상을 위해 과외를 받는다면 절대적인 시험점수와 상대적인 성적등수 모두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전보다 높은 시험성적을 받게 되어 그 학생의 등수는 정체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과외를 받지 않는다면 등수가 더욱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외를 그만 둘 수 없다. 경쟁의 맥락에서 보면 인지향상도 과외와 마찬가지로 위치제이다. 예를 들어 낮은 인지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 인지향상제를 복용하면 학업수행능력이 향상되어 처음에는 등수가 상승하겠지만 인지 기능이 높은 학생들도 인지향상제를 복용한다면, 그들의 등수는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인지향상제의 전면적인 사용은 절대점수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상대평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향상제의 허용은 불평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공정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보스트롬(Nick Bostrom)과 샌드버그(Anders Sandberg)는 “만일 인지향상이 순수하게 위치제라면, 그러한 향상은 시간, 노력, 금전의 낭비일 것이다. 사람들은 인지적 ‘군비경쟁’에 휘말릴 것이고 단지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자원들을 소비할 것이다.”¹⁶⁾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인지향상제 허용에 대해 어떤 윤리적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동일한 노력을 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거의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서 가족 배경, 인종, 종교, 성, 사회적 배경의 차이는 성공의 방해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노력하려는 의지 역시도 자의적인

요소로서 배제되어야 한다. 롤즈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하여 수입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¹⁷⁾고 하였다.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 모두를 극소화시킨다는 도덕적 전제를 실현시키고자 한 롤즈는 형식적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만족하지 않고 천부적인 불평등을 극소화할 수 있는 교정적 의미의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안하였다.¹⁸⁾

인지향상제가 허용된 사회는 공평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인가? 우리는 약물 인지향상이 두 가지 유형의 기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먼저 인지향상제는 자연적 운에 의한 기회의 제한을 크게 감소시킨다. 인지향상제를 통해 인지 기능이 개선된 학생들은 자신이 원래 해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에 도전할 수는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보다 높은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학교나 직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까지는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인지향상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까지 보장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인지향상제가 위치제라면 그것은 사람들의 지적 격차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본래 뛰어난 인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향상제를 통해 더 높은 인지 능력을 보유할 것이며 학업이나 취업 경쟁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지기능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겠지만 실제로 그 지위에 올라 높은 수입을 보장받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공평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선천적인 재능의 분배에 의해서 수입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면,

16) Bostrom N., Sandberg A., “Cognitive Enhancement: Methods, Ethics, Regulatory Challenges,” *Sci & Eng Ethics*, Vol.15, Issue.3, 2009, p.328.

17) Rawls J., pp. 64.

18) Ibid.

인지향상제가 허용된 사회는 공평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규칙은 롤즈의 정의의 제 2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인지향상제의 효능이 모두에게 동일한 경우에 인지향상은 롤즈가 의미하는 공정성과는 무관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신경정신약물학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향상제의 효능은 개인이 보유한 인지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만일 이들 연구 결과들이 신빙성이 있다면 인지향상제 허용 규칙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2) 인지향상제의 효능에 개인차가 있을 경우

인지향상제들의 반응 수준에 따라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인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인지향상제들의 효능에 관한 신경정신약물학 연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파라(Martha J. Farah) 등은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가 실험대상자에 따라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의 향상 수준이 달라지는 연구들에 주목하였다.¹⁹⁾ 엘리엇(R. Elliott) 등은 메틸페니데이트가 건강한 젊은이들의 공간 작업 기억과 계획수립(spatial working memory and planning)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낮은 수행(performance) 수준들을 보인 실험대상자들이 높은 수행 수준들을 보

인 실험대상자들에 비해 약물에 의한 향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보고하였다.²⁰⁾ 김버그(Daniel. Y. Kimberg) 등은 도파민 작용제(dopamine agonist)인 브로모크립틴(bromocriptine)이 낮은 작업 기억을 보유한 실험대상자의 다양한 실행 기능 수행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가장 높은 작업 기억 능력들을 보유한 실험대상자들의 수행을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²¹⁾ 랜달(Delia C. Randall) 등은 모다피닐(modafinil)이 전체 실험대상자들 중 지능이 낮은 집단에게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지능이 높은 집단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²²⁾

데 옹커(Reinoud de Jongh) 등은 이들 실험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의 원인으로 인지향상제들의 효능이 역-U자형(∩)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³⁾ 도파민 작용제들, 메틸페니데이트, 모다피닐처럼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의 도파민 수준을 높이는 약물들은 복용량이 증가할수록 작업 기억을 점점 향상시키며 최적의 용량에 도달하면 최고의 수행 수준을 보여주지만, 그 이상을 복용하면 수행 수준이 감소되는 분포곡선을 그린다. 그런데 본래부터 높은 작업 기억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 분포의 최정상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지향상제에도 과다 복용한 것처럼 반응하여 작업 기억이 약화된다.²⁴⁾ 반대로 낮은 작업 기억을 보유한 사람들은 ∩ 분포 곡선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에 위치하

19) Farah M.J., Illes J., Cook-Deegan R. et al., "Neurocognitive Enhancement: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 *Nature Reviews Neuroscience*, Vol.5, 2004, pp. 422.
 20) Elliott R, Sahakian BJ, Matthews K, et al., "Effects of methylphenidate on spatial working memory and planning in healthy young adults," *Psychopharmacology*, Vol.131, Issue,2, 1997, pp. 196-206.
 21) Kimberg, D. Y., D'Esposito, M, Farah, M.J., "Effects of bromocriptine on human subjects depend on working memory capacity," *Neuroreport*, Vol,8, 1997, pp. 3581-3585.
 22) Randall, D. C., Shneerson, J. M., File S. E., "Cognitive effects of modafinil in student volunteers may depend on IQ," *Pharmacology Biochemistry and Behavior*, Vol,82, Issue,1, 2005, 133-139.
 23) de Jongh, R., Bolt I., Schermer M., Olivier B., "Botox for the brain: enhancement of cognition, mood and pro-social behavior and blunting of unwanted memorie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Vol,32, 2008, pp. 768-769.
 24) de Jongh, R., Bolt I., Schermer M., pp. 768-769.

므로 인지향상제는 최적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효과를 나타낸다.²⁵⁾

이들 연구들에 대해 보스트롬(Nick Bostrom)과 샌드버그(Anders Sandberg)는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미 뇌가 생물학적 최적도에 근접한 최고의 사람들보다는 수행 스펙트럼의 최저점에 위치한 사람들을 향상시키기 더 쉬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재능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일지도 모르며,²⁶⁾ 따라서 향상의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신경생리학적 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일 지금까지의 약물 인지향상에 관한 연구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인지향상제의 주요 소비층은 일부 인지능이 낮은 사람들일 될 반면에 높은 인지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인지향상제를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면 인지향상의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규칙은 공정한 것인가? 모두가 인지향상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더라도 서로 다른 신경생리학적 반응 차이는 새로운 차원의 불공평한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 특정 인지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인지향상제로 이익을 얻는 반면에 높은 인지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타고난 학생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 재능의 격차는 천부적인 운의 차이로 인정하고 그러한 불평등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인지향상은 다수의 직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우리가 불평등의 제거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불평등을 선택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롤즈도 완벽한 자유 시장 경제에서 완전한 평등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생각한다.²⁷⁾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두 가지 자산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자연적 재능이며 둘째는 유산과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양육이 있다. 개인의 소유권을 옹호하는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정체에서 이 두 자산의 불평등을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우연에 의해 획득된 이들 자산 또는 자질들을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어 사람들은 재산이나 공적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성취도를 보인다. 롤즈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계급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이에 자극받은 다른 계급들도 이익을 추구할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강조한다.²⁸⁾ 결과의 불평등은 극단적이지만 았다면 사회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가장 적은 몫을 차지하는 최소 수혜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들 불평등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만 할까?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²⁹⁾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여러 사회 구조들 중 최소 수혜자가 가장 더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선택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는 한에서 최소 수혜자는 그 사회의 불평등을 수용할 것이다. 이 차등의 원칙을 인지 향상에 관한 논의에 다시 적용시켜 보자.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는 어느 수준의 인지 능력을 타고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인지향상제를 허용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선택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의 규칙(Maximin rule)에 따라 사회 구조를 결정한다. 최소 극대화의 규

25) Ibid.

26) Bostrom N, Sandberg A., “Cognitive enhancement: methods, ethics, regulatory challenges,” *Sci Eng Ethics*, Vol,15, Num,3, 2009, pp. 329.

27) Rawls J., pp. 62-63.

28) Ibid., pp. 68.

29) Ibid., pp. 65-73.

칙이란 “여러 대안들의 우열을 그들이 가져올 가능한 최악의 결과에 따라 가리는 것으로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다른 대안이 갖는 최악의 결과에 비해 가장 우월한 경우에 그 대안을 채택하는 규칙”³⁰⁾을 의미한다. 이는 최악의 경우가 가장 좋은 선택지를 택하도록 하는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인 선택 지침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최소 극대화 전략이 채택된다면 차등의 원칙이 자동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등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최악의 경우를 최선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균 이하의 인지 능력을 가진 집단에 속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사회를 선택하는 편이 가장 합리적이다. 인지향상제는 인지 기능에 있어서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 간의 격차를 감소시킨다. 더 나아가서 인지 능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지향상제는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규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사회를 선택하라는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

마지막으로 인지향상제가 인지적 격차를 줄일 때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한 기회균등 원칙을 충족시키는 지 검토해보자. 인지향상은 높은 인지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낮은 인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효과를 준다. 두 집단 간의 인지적 격차가 준다는 것은 원래는 인지 기능이 낮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취업 경쟁에 뛰어 들었을 때 승산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인지향상제를 복용함으로써 단순히 경쟁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오를 전망도 가지게 된다. 이는 국가

가 놓여준 출신 자녀나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낮은 인지능력 보유자들이 인지향상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규칙은 공평한 기회균등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롤즈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³¹⁾ 그래서 어떤 행위의 공정성은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부터 나오며 결과의 공정성 역시도 공정한 규칙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르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 그 규칙은 공정하며 규칙의 결과도 공정하다. 차등의 원칙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규칙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우리는 약물 인지향상이 허용된 사회에서 낮은 인지능을 보유한 사람과 약물 인지향상이 금지된 사회에서 낮은 인지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전망을 비교해보고 두 사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절대 다수는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능을 타고난 사람이 된다면 약물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한 사회를 선택하면 우리는 그 사회의 규칙에 따라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몫을 획득한다. 우리는 이미 사회의 규칙에 수긍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할당된 몫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행복할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규칙에 동의하고 그 규칙이 존재하는 사회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인지향상제 복용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았던 간에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향

30) Rawls J., pp. 133.

31) Ibid, pp. 76.

상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해당된다.

IV. 맺음말

이 글은 롤즈의 정의 원칙들을 약물 인지향상에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건강한 성인들에 대한 인지향상제들의 효능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들 약물들이 낮은 인지 수행을 보인 실험 대상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는 반면 높은 인지 기능들을 보유한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약물 인지향상의 허용이 롤즈의 정의 원칙들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약물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물 인지향상은 롤즈의 절차적 공정성에 부합하므로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이 결론이 완전히 입증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인지향상제들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신경과학계의 전반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만큼 신빙성이 있는가? 이 연구 성과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에서 나온 결과가 복잡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는 실제 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인가? 그리고 약물 인지향상의 허용이 롤즈의 정의 원칙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인지향상제 사용의 불공정성과 부정행위 논란이 사라질 것인가? 공정성에 대한 다른 사회 철학 이론들은 약물 인지향상에 대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론적 차원을 떠나 현실적 차원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약물 인지향상이 불공정하고 부정행위라고 느낄 수 있다. 마

지막으로 현재 연구 중인 새로운 인지향상제들이 출시되어 장래에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적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 부정행위 논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약물 인지향상의 쟁점들 중 하나인 부정행위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지향상제 사용이 철학적 사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 능력을 증진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비생물학적 인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 중 일부가 전통적인 비생물학적 향상뿐만 아니라 약물 인지향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³²⁾ 앞으로 인지향상제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약물 인지향상은 우리 사회의 관심사들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윤리학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약물 인지향상의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들 중 하나인 부정행위에 관련된 논쟁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약물 인지향상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인지향상제들의 사용으로 제기되는 안전성(safety), 의료화(medicalization), 강압(coercion), 부자연스러움(unnaturalness), 본래성(authenticity), 정체성(identity)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신경윤리뿐만 아니라 신경과학, 정신건강의학, 생명윤리, 의료윤리, 기술철학, 사회철학 등 여러 학문 분야들이 교차하며 논의할 여지가 많은 쟁점들이다.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약물 인지향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2) 송옥진, “중·고교생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입시철·학기말에 부쩍,” 한국일보, 2013. 10. 2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0/h2013102921060621950.htm>,

[Abstract]**Is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Cheating?***

Lee, Sang-Mok** · Choi, Jong-Hyun***

One of the arguments against cognitive enhancement is that cognitive enhancement is cheating. Cheating is primarily a matter of fairness. Therefore, the validity of ‘cheating argument’ depends on whether cognitive enhancement is fair or not. Wealthy and intellectual social class tends to access cognitive enhancement more easily, and this tendency can cause a cognitive gap in our society. The cognitive gap would trigger different academic abilities, and consequently, wide a gap between riches and poors. So Mehlmen suggests a rule allowing cognitive enhancers for everyone to reduce inequality. It seems to be fair if we benefit a same level from cognitive enhancement. However, if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have a same effect for everyone, a huge cognitive gap between lower cognitive group and higher cognitive group would still remain.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which do not give lower cognitive members a highest benefit nor an equal opportunity does not seem to be fair. However, according to neuro-pyschopharmacological researches, cognitive enhancers have cognitive enhancing effects on a lower cognitive group, while not having the effects on higher cognitive group. This result means that cognitive enhancement reduce a cognitive gap among healthy people. Consequently,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gives the least advantaged members of cognition a best benefit and an equal opportunity to join a competition. Therefore, the rule allowing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is not unfair rule in accordance with Rawls’s principles of justice, and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could not be regarded as cheating.

Key words: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Cheating, Fairness, Difference principle of John Rawls, Principle of equality and opportunity

원고투고일 : 2013년 11월 5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8일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71-A00005)

** Department of Philosophy · Ethics, College of Humanities, Dong-A University

***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